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2. 16 선고 2019가단521507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

담당변호사 임태호

피 고 1. B

2. C

3. D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혁

변 론 종 결 2021. 1. 19.

판 결 선 고 2021. 2. 16.

주 문

1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1. 피고들과 소외 E 사이에 광주시 F 임야(이하 '이 사건 임야'라고 함) 6,650㎡ 중 각 1/27 지분에

관하여 2018. 3. 26.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2. 피고들은 E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1/27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3. 27. 접수 제2638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E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합계 1억 2,000만 원을 빌려가고도 일부를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04114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20. 4. 28. “피고(= E)는 원고(= 원고)에게 차용금 7,000만 원을 지급하되, 이를 84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한다”는 내용이 포함된 ‘조정을 갈음하는 결정’을 하였다(같은 법원 2020머522927).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한편 E는 이 사건 임야 중 1/9 지분의 소유명의자였는데, 2018. 3. 26. 피고들에게 이를 1/27지분씩 증여하였고(이하 ‘이 사건 증여계약’이라고 함), 2018. 3. 27. 피고들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당시 E는 위 임야지분 외에 소유 부동산이 없었고, 무자력 상태였다. [인정근거 :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]

2. 판단

가. 당사자들의 주장

(1)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각자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.

(2) 피고들의 주장

소외 G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조부인 소외 망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(이하 ‘소외 종중’이라고 함)에 증여하였고, E는 소외 종중으로부터 이를 명의신탁받았는바(다만 등기는 G에서 E 등 앞으로 바로 경료되었다), 이 사건 증여계약은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
또한 당시 피고들은 이를 소외 종중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E의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.

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.

나. 판단

(1) 피보전채권의 존재

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E에 대해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성립한 것이므로,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(2) 사해행위 여부

(가) 이 사건 임야가 명의신탁된 것인지

살피건대, 갑 제4호증, 을 제1, 2, 8 내지 10호증,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,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, 을 제3호증의 1, 2, 을 제4호증의 1, 2, 을 제5호증, 을 제6호증의 1 내지 3(사진)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소외 G 소유명의의 이 사건 임야가 소외 I, J, K, L, M, E 및 피고들(이하 이들을 ‘E 등’이라고 함)의 공동명의(각 1/9 지분)로 이전되었는데, 이들 중 8명은 G과 같은 항렬의 친척인바(E는 G의 자녀임), 이는 명의신탁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점, E 등은 이 사건 임야지분을 취득하고도 등록세를 낸바 없고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등기권리증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(G의 숙부인 소외 N이 등록세를 내고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여온 것으로 보임), 위 지분권자 중 J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지분을 별다른 권리 주장 없이 피고들에게 무상이전해준 점, 이 사건 임야에는 H 부부, N, G 동생의 분묘가 차례로 설치되었고 향후에도 O씨 일가의 분묘가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, 다만, 이 사건 임야의 소유명의가 E 등으로 변경될 당시 소외 종중이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채로

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, 결국 이 사건 임야는 G 개인이 이른바 O씨 일가의 선산으로 사용토록 할 목적으로 E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.

(나)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

그리고 이처럼 G이 E 등에게 이 사건 임야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, 그 명의신탁약정과 E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라고 할 것이고, 따라서 이 사건 임야 중 E 명의 지분은 E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E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, E가 자신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E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, 이를 E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(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다74874 판결 등 참조).

(3) 소결론

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우정